

##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 제4.1조 적용범위 및 목적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각각의 국제적 의무 및 관세법에 따라, 양 당사국 간 교역 되는 상품 및 양 당사국 간 운송 수단의 이동에 적용되는 통관 절차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양 당사국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화를 이루게 한다.
  - 나. 양 당사국의 행정절차를 포함한 관세법 적용에 대하여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한다.
  - 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상품의 통관 및 운송수단의 이동을 보장한다.
  - 라.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한다. 그리고
  - 마. 이 장의 적용범위 내에서, 관세행정기관 간 협력을 증진한다.

### 제4.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관세법**이란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의하여 운영, 적용 또는 집행되는 법률을 의미한다.

**통관절차**란, 각 관세행정기관이 통관관리의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운송수단에 적용하는 취급을 말한다.

**특송화물**이란, 상품의 신속한 국제 이동을 위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관세 행정에 책임이 있는,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의하여 수입되는 모든 상품을 말한다.

**운송수단**이란 인 또는 상품을 운송하여 영역으로 들어오거나 영역에서 나가는 다양한 종류의 선박, 차량, 항공기 및 짐 싣는 동물을 말한다. 그리고

WCO란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를 말한다.

#### 제4.3조 투명성 및 문의처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관절차 및 관행이 예측가능하고, 일관되며 투명하고 무역을 원활히 하도록 보장한다.
2. 각 관세행정기관은 적용하거나 집행하는 모든 관세법 및 행정절차를 공표한다.
3. 각 관세행정기관은 이 협정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관세 사안에 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를 다루는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지정하고, 그러한 문의처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른 쪽 관세행정기관에 제공한다. 그러한 질의를 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는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4. 각 관세행정기관은 이 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품 및 운송수단의 이동을 규율하는 관세법 또는 절차의 중대한 수정에 대하여 다른 쪽 관세행정기관에 시의적절한 통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 제4.4조 원활화 및 조화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자국의 절차 운영에 있어 상품 통관을 원활하게 한다.
2. 각 당사국의 통관절차는 가능한 경우, 세계관세기구의 관세데이터모델과 세계관세기구의 관련 권고사항 및 지침을 포함한 세계관세기구 기준 및 권고 관행을 준수한다.
3. 각 당사국은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와 관련된 각 기관의 데이터 요건을 조화롭게 하고, 무역 데이터 제출을 최소화하는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다.
4. 각 관세행정기관은 수입자 및 수출자가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한 기관에 제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무역업자가 상품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전자적 또는 그 밖의 다른 방식의 접촉선을 제공한다.

#### 제4.5조 자동화 시스템의 사용

1. 관세행정기관은 WCO 내 이 분야에서의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특히 종이 없는 무역의 맥락에서, 비용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우 통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한다.

2. 관세행정기관은 위험관리 및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선적 도착 전 정보와 자료의 제출 및 처리를 포함하여,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 기술을 사용한다.

3. 양 당사국은 상품이 단일한 시간과 장소에 양 당사국의 관세 영역에 들어오거나 떠날 때, 권한 있는 국가 당국에 의한 상품의 동시 검사를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 제4.6조 위험관리

1. 통관 절차의 운영에서, 각 관세행정기관은 고위험 상품 선적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위험 상품의, 반출을 포함한, 통관을 촉진한다. 관세행정기관은 제4.13조에 따라, 위험 관리에 관한 응용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

2. 양 당사국의 국경 간 상품의 이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관세행정기관은 정기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검토한다.

#### 제4.7조 상품의 반출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자국 관세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도착 후 48 시간 이내에 상품을 반출하는 절차

나. 도착 시에 상품을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상품의 물리적 도착 전에 정보를 사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다.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도착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라. 적용 가능한 관세, 조세 및 수수료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그 결정을 저해함이 없이, 수입자가 세관으로부터 상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

3. 각 당사국은 긴급 통관을 요하는 상품이 공휴일을 포함하여 하루 24시간 통관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4.8조 특송화물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관리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 가.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적용가능한 경우, WCO 탁송물 즉시반출 지침을 활용한다.
- 나.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 그 특송화물의 반출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전자적 제출 및 처리를 규정한다.
- 다.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특송화물 서비스에 의해 운송되는 선적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일 서류의 제출을 허용한다.
- 라.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 마.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특송화물이 도착한 경우, 필요한 통관 서류를 제출한 후 4시간 이내의 특송화물의 통관을 규정한다.
- 바. 중량 또는 과세가격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리고
- 사.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미화 100달러 이하 특송화물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sup>1</sup>

#### 제4.9조 사전심사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나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sup>2</sup>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다음에 대하여 서면 사전심사서를 발급한다.

<sup>1</sup> 이 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송화물이 항공 화물운송장이나 그 밖의 선하증권을 수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제한 상품에 대하여 공식적인 반입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sup>2</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표자를 통하여 사전심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가. 품목분류

나.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그리고

다.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2.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를 위한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는

가.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상품의 상세한 설명과 사전심사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나.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사전심사서를 발급하는 과정 중에 언제라도, 신청인에게 특정한 기간 내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다. 사전심사가 신청인에 의하여 제공된 사실과 상황, 그리고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신청인이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상품의 견품을 포함하여, 결정권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밖의 관련 정보에 기초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라.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접수된 경우, 사전심사서가 발급 관세행정기관의 자국 언어로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발급되도록 규정한다.

3.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접수된 경우,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사전심사서를 발급한다.

가. 품목분류에 관하여, 40일 이내 또는 국내 법률에 명시한 그 보다 짧은 기간 내에 발급한다. 또는

나. 원산지에 관하여, 90일 이내에 발급한다.

4. 당사국은 제2항나호에 따라 요청한 추가 정보가 특정한 기간 이내에 제공되지 아니할 경우 사전심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5. 당사국은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6. 제7항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그 심사일부터 3년 이내에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그 밖의 기간 내에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그 심사서에 기술된 상품의 모든 수입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한다.

7. 당사국은 다음의 결정이 있을 경우, 사전심사 결과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가. 심사가 잘못된 사실이나 법에 기초하였던 경우
- 나. 제공된 정보가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 다. 이 협정에 합치하는 국내법상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 또는
- 라. 심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8. 발급 당사국은, 심사가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에 기초하였던 경우에 한해서만 사전심사 결과를 소급하여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9. 자국 국내법의 비밀유지 요건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전심사 결과를,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표한다.

10. 수입자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부여되는 대우가 사전심사 결과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관세행정기관은 수입의 사실 및 상황이 사전심사가 기초하였던 사실 및 상황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 제4.10조 재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행정적 심사, 판정 또는 결정의 영향을 받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그 밖의 인이 다음에 접근하도록 규정한다.

- 가. 재심 중에 있는 결정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무원 또는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결정에 대한 행정적 재심의 단계, 그리고
- 나.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른 행정적 결정의 사법적 재심

2.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그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대한 재심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적 재심을 수행하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행정적 재심을 수행하는 당사국에게 그 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 규칙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보는 청구인에게 제공되고 그러한 결정의 사유는 서면으로 제공된다.

#### 제4.11조 관세 협력

1. 양 당사국은 관세 및 관세 관련 사안에 대한 그들의 협력을 증진한다.
2. 양 당사국은 상품의 합법적 이동을 원활히 하고,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통관 기술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한다.
3. 양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의 준수를 달성하는 데 협력한다.
  - 가.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특혜관세대우 신청 절차 및 검증 절차를 포함하여, 수입 또는 수출을 규율하는 이 협정의 규정의 이행 및 운영
  - 나.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수입 상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관세평가 및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원산지 결정에 상호 지원하는 것, 그리고
  - 다.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관세 사안

#### 제4.12조 양자 관세협의

1. 제4.14조를 저해함이 없이, 각 관세행정기관은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운영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관세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언제라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양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상호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3항에 따라 설립된 관련 접촉선을 통하여 수행되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2. 그러한 협의가 그러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그 사안을 제4.14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 위원회에 검토를 위하여 회부할 수 있다.
3. 각 관세행정기관은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목적상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하고, 그러한 접촉선의 세부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양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자국 접촉선의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신속히 서로에게 통보한다.
4. 관세행정기관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운송수단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에서 발생되는 모든 무역 원활화 사안에 대하여 서로 협의할 수 있다.
5. 이 조에 따른 협의는 제19장(분쟁해결) 또는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양해」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 제4.13조 비밀유지

1.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목적상 수집되고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사국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모든 정보는, 그 비밀정보를 제공한 인이나 당사국의 허가 없이는 원산지 결정 및 관세 사안의 운영 및 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목적상 수집된 정보는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을 이행하는 관세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시작되는 행정적,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인 절차에 사용될 수 있다. 그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사국에게는 그러한 사용 이전에 통보될 것이다.

#### 제4.14조 관세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는 관세 사안 및 원산지 규정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2. 위원회는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고 그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효과적이고, 통일되며, 일관된 운영 보장
  - 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중립적인 변경에 기초한 부속서 2-가(관세 양허표) 및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유지
  - 다. 공동위원회에 다음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제안된 해결 방안 권고
    - 1)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해석, 적용 및 운영
    - 2)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
    - 3)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 그리고

4) 양 당사국 간 무역의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운영 관행을 어느 한쪽 당사국이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라. 국제 표준에 따라, 양 당사국간 무역을 원활히 하는 통관 관행 및 표준 채택

마. 품목분류를 포함하여, 이 장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관련된 모든 분쟁 해결, 그리고

바. 부속서 2-가(관세 양허표)의 양 당사국의 양허표와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수정에 관하여 공동위원회에 제18.2조(공동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승인을 제안

4. 위원회는 자신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위원회는 이 협정 발효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회합한다.

5. 위원회는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수립된 메커니즘의 공동의 목적과 건전한 기능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결의, 권고 또는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 제4.15조 관세 평가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의 규정에 따라 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상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제4.16조 품목분류

양 당사국은 그들간 교역되는 상품에 1986년 6월24일 체결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을 적용한다.